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-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2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가. 현재 마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 중 특별신용보증추천의 경우 추천 대상자가 추천서를 받는 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개정하여
- 나. 특별보증추천 대상자 선정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의결없이 자체 사전심사 후 추천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조문 수정
- 나.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 삽입(제3조의 2)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정 기금이 아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.(5년)
- 다.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항목 중 특별신용보증추천 대상자 선정 항목 삭제(제7조 제1항 3호)
  -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추천 대상자에 한해 심의회 의결없이 신용보증서 발급 기관의 사전심사만으로 추천서를 발급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항목 중 특별신용보증추천 대상자 선정 항목을 삭제함.
- 라. 구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자금계획 공고하도록 조례 반영
  - 감사담당관에서 '부패영향 자율평가' 검토결과 행정의 투명성(접근성과 공개성)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공고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용자계획의 공고 조항을 삽입

### 3. 개정근거

『지방자치법』 제142조,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제13조

### 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 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0. 12. 23. ~ 2011. 1. 12.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(2011. 1. 27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3조에 따라”로,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,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제2호 및 제3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며, 제4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제1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3조의2(존속기한)**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제2항 중 “목적외에는”을 “목적 외에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책임중”을 “책임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 하며,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, “위원중에서”를 “위원 중에서”로 하며,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위촉위원”을 “위촉 위원”으로, “보궐위원”을 “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”으로, “전임자의”를 “전임위원 임기의”로 하고, 제4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하며, 제5항 중 “개의”를 “개최”로 하고, “3분의2 이상 의”를 “3분의 2 이상의”로 하며, 제6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,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자 이어야 한다.”를 “자이어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제4항에 따른”으로, “대 하여”를 삭제하고, “관하여”를 “관한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출납폐쇄후”를 “출납폐쇄 후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융자계획의 공고) 구청장은 매년 융자규모, 융자한도, 융자조건,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 라 한다)</u>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<u>제43조에 따라</u>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.....</p>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중소기업자" 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.</p> <p>2. "운전자금" 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</p> <p>3. "시설자금" 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·정보화·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.</p> <p>4. "수도권" 이라 함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.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1. ....<u>란</u>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<u>제2조에 따른</u>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2. ....<u>이란</u>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3. ....<u>이란</u>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4. ....<u>이란</u> .....                  ...<u>제2조제1호에 따른</u> .....                  ...</p>
<p><b>제3조(기금의 설치)</b>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은 중소기업</p>	<p><b>제3조(기금의 설치)</b>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</u>.....</p>

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·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(신 설)
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기타 출연금·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(豫受金) 및 용자상환금 등

② (생략)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~ 2. (생략)
3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~ ②(생략)

.....  
.....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.....  
.....

제3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....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.....
2. ....
3. 그 밖의 ....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.....  
각 호....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.....

② .....  
목적 외에는 .....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~ ② (현행)

③ 「지방재정법」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

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(이하 "금융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~ 2. (생략)
- 3.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
- 4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민간경제단체 임직원,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

과 같음)

③ .....  
...책임 중 .....  
.....

④ .....  
.....제2조제1항제2호  
에 따른 .....  
.....

⑤ 제4항에 따른.....  
.....

제7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.....  
.....  
.....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  
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.....  
.....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- 3. <삭제>
- 4. 그 밖에 .....  
.....

② .....  
1명..... 9명 .....  
.....  
..... 위원 중에서 .....  
.....

③ ..... 해당 .....  
.....

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, 간사는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장이 되고, 서기는 지역경제과 기금담당 직원이 된다.

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용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당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, 용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·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

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.

제9조(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) 구청장이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

.....  
.....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
위원의 ..... 전임위원 임기의 .....  
.....

④ .....  
..... 1명 ...  
.....  
.....

⑤ .....  
.....  
..... 개최 ..... 3분  
의 2 이상의 .....  
.....  
.....  
.....  
.....

⑥ ..... 위원 중 .....  
..... 예산의 범위에  
서 .....  
.....

제8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

① .....  
..... 자이어야  
한다.

제9조(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) .....  
..... 제6조제4항에 따라 .....  
.....

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융자금의 사용 등)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11조(결산 및 보고)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(신 설)

..... 금융기관에 ..... 관한  
.....  
.....

제10조(융자금의 사용 등) ① .....  
.....  
..... 제5조에 따른 .....  
.....

② .....  
.....  
..... 제5조에 따른 .....  
.....

제11조(결산 및 보고) ① .....  
.....  
..... 출납폐쇄 후 .....  
.....

② ..... 제1항에 따른 .....  
.....  
..... 서울특별시 마포  
구의회.....

제11조의2(융자계획의 공고) 구청장은 매년 융자규모, 융자한도, 융자조건,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